제4회 규제합리화위원회
성장분과 회의록

2026. 5. 26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6. 5. 26. (화)

○ 출석위원(13명)

- 민간위원 : 남궁범 분과위원장, 강영철, 김춘순, 류정모, 박민수, 박익수, 이종원, 전창대, 조원동, 최원석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공정위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6-122	국토교통부	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안	의결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의결) 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안(국토부, 2026-122호)

소관 부처	국토교통부
규제사무명	1. 국토부 장관이 플랫폼 관련 자료요청 시 협조의무가 있는 기관 등
논의내용	○ **(위임입법 한계 준수여부)** **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」**(이하 '**법**') **제13조의2제2항**에서 그 밖에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**에 **협조**를 **요청**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**위임근거 자체는 명확** - 또한 **「행정규제기본법」** 제4조제2항은 전문적·기술적 사항 혹은 경미한 사항은 **구체적으로 범위**를 정해 **고시에 위임**할 수 있도록 **규정 중**으로, - **협조 기관**은 플랫폼 **운영**에 필요한 **전문적·기술적 사항**으로 볼 수 있어 **고시**에 **재위임**도 **가능**할 것으로 보임 - 한편, 이와 관련하여 법상의 위임근거인 '**그 밖의 비영리기관**'의 **범위**가 **포괄적**으로 **규정**되어 있어 향후 **법 개정** 시 **위임범위 구체화를 고려할 필요**가 **있다**는 **의견**이 있었음 ○ **(협조내용의 포괄·광범위성)**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**운영에 필요한 자료**는 **매우 다양**할 것이므로 **그 종류를 한정**하기에는 **어려움**이 있어 보임 - 그러나, **개정안**처럼 **규정**할 경우 **국가**는 **필요**에 따라 **부동산 관련 비영리법인**이 **보유**한 **모든 자료**를 **이론상 요구**할 수 있게 되어 **비영리법인**의 **잠재적 규제 부담**이 **확대될 우려** - **이를 방지**하기 위해서는 **시행령 조문상**으로 협조 시 **비영리법인 동의를 전제**함을 명확히 할 필요

	- 한편, 이와 관련하여 **협조 시 동의**를 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**비영리법인 권익 보호**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향후**에라도 **구체적 데이터의 범위**를 **법령**에 **구체화 할 필요**가 있다는 **의견**이 있었음 ○ **(비용부담) 협조 대상 자료**는 해당 기관 **旣보유 자료**에 **한정**되고, 데이터의 송·수신과 관련한 조치는 현재 비영리법인들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 있는 등 **비용부담이 크진 않을 것**으로 보임 - 그러나, 국토부가 실제 비용이 발생함에도 **우월한 지위를 이용**하여 **이를 민간에 전가**하려는 **시도**를 할 **가능성**이 있으므로 - **협조 자체**를 **비영리법인 판단**에 따른 **자율적**인 **의사결정**에 **근거**하도록 하여 **비용 문제를 원천 해소**할 **필요성**이 있어 보임
위원회 결정 내용	▶ **민간 비영리법인**을 **대상**으로 **자료협조 요청**을 할 경우 **해당 기관**의 **동의**를 요하도록 **시행령 조문**에 **명문화**할 것을 개선권고